

국립강릉원주대학교 일반대학원생의 강원대학교 학위수여에 관한 특례 규정

제정 2026. 8. 1. 규칙 제2176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통합 이전에 국립강릉원주대학교(이하 “강릉원주대학교” 라 한다) 일반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의 강원대학교 학위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본원칙) 이 규정은 다음 각 호를 기본원칙으로 한다.

1. 「국립학교 설치령」(대통령령 제36147호) 부칙 제2조(국립강릉원주대학교의 통·폐합에 따른 경과조치, 2026. 2. 27.)
2. 강원대학교 학칙 부칙 제2조(폐지되는 강릉원주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등에 대한 경과조치, 2026. 3. 1.)

제3조(학위수여 요건) ① 강릉원주대학교 일반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은 원칙적으로 「국립강릉원주대학교 학칙」과 「국립강릉원주대학교의 교육과정」을 적용 받는다. 다만, 「강원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」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강원대학교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.

1. 「강원대학교 학칙」 제104조에 따른 수료학점 취득
2. 「강원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」 제10조에 따른 논문연구 교과목 및 제18조에 따른 연구윤리와논문작성 교과목 이수
3. 「강원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」 제14조에 따른 학위논문 제출자격 충족
4. 「강원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」 제15조에 따른 학위논문의 제출 및 심사 합격

② 제1항 각 호의 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「강원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」에 따른다.

제4조(학위 종별) 강릉원주대학교 일반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이 강원대학교의 학위를 받고자 하는 경우, 학위증에 표기되는 학위종별은 「강원대학교 대학원 학위 수여 규정」[별표 1] ‘학위종별 및 해당학과’에 따른다.

제5조(세부사항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학위수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부 칙 (2026. 8. 1. 규칙 2176호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특례) 제3조에 단서에 따른 학위수여 요건의 적용에 관하여는 2028년 2월 학위수여자까지 종전의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. 다만, 병역·출산·질병으로 휴학한 경우에는 해당 휴학기간을 산입하여 적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